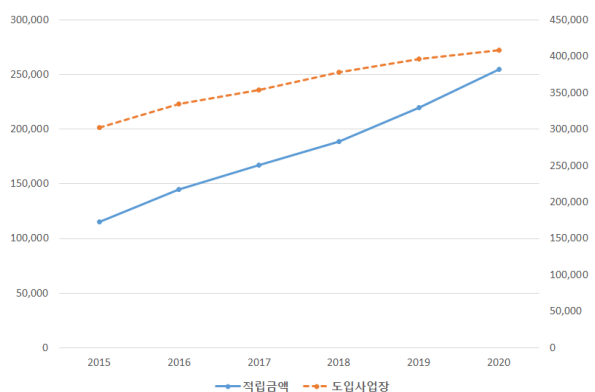


요약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DC) 퇴직 연금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동 제도의 특성상 제도 도입 및 설계 단계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은행에 비해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률이 낮고 수수료 수준이 높은 편임.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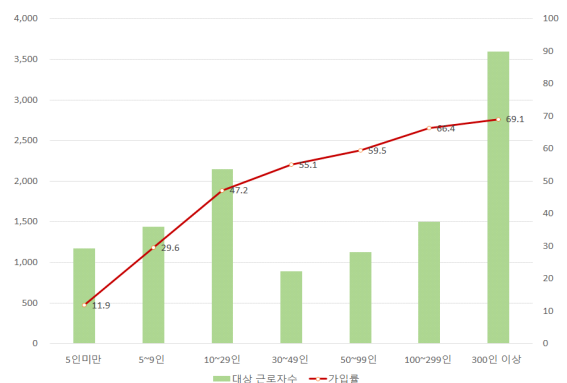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및 가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이어서 질적인 성장이 부족한 상황임
 - 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5조 원으로 2015년 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퇴직연금 가입 기업도 301,991개(2015년)에서 408,462개(2020년)로 35.2% 증가하였음(그림 1) 참조)
 - 그러나 2020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30% 미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52.4%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그림 2) 참조)

〈그림 1〉 퇴직연금 적립금액 및 도입 사업장 수 연도별 추이
(단위: 십억 원, 개소)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5~2020), “퇴직연금 통계결과”

〈그림 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 현황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0), “퇴직연금 통계결과”

○ 한편 우리나라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표준형 DC 퇴직연금')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¹⁾

- 복수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단체계약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따른 비용(수수료) 절감 및 적립금 운영 성과를 높여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축진이 기대됨
 -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구조²⁾를 가지므로, 복수사용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커질 경우 단일사용자에 비해 운용관리 수수료 부담이 적을 수 있음

○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 및 설계 단계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규약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제도를 설정하여 이후 지방관서에 규약을 신고해야함³⁾
 - 표준규약에는 일반적인 확정기여형(이하, 'DC')제도 규약 이외에 추가 기재사항이 포함됨
 - 추가 기재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특성과 명칭, ② 가입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 ③ 적립금 운용방법 및 선정기준, ④ 표준형 DC 퇴직연금 탈퇴 사유 및 절차, ⑤ 수수료 등이 있음
- 이러한 특징상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상품개발 및 설계, 표준규약 제시 등이 필요함
 - 도입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시 노사합의 및 규약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말까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근로복지공단 등 10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137개 표준규약을 승인받았음⁴⁾(〈표1〉 참조)

〈표 1〉 표준형 DC 퇴직연금 복수사용자 표준규약 승인·체결 현황

퇴직연금사업자	연도별 승인 건수					누적 합계 (①)	실제 운영 (②)	계약 체결률 (③)
	2016	2017	2018	2019	2020.9			
생명보험(2)	1	3	2	47	1	54	14	25.9
손해보험(1)	-	-	-	1	-	1	0	0.0
은행(6)	-	9	11	46	15	81	69	85.2
근로복지공단(1)	-	-	-	1	-	1	0	0.0
총계(10)	1	12	13	95	16	137	83	60.6

주: 계약체결률(③)은 실제운영 건수(②)를 누적합계 건수(①)로 나눈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2021),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 및 심사지침」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표준 규약을 작성 및 신고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기업)를 대상으로 하나의 DC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임
- 2) 예를 들어 KB손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잔액 기준 1억 원 미만 0.45%,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0.40%, 10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0.35% 등으로 적립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운용관리 수수료가 낮아짐
- 3) 고용노동부(202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영 및 심사지침」
- 4) 고용노동부(202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영 및 심사지침」

- 금융권의 퇴직연금 사업자 43개사(2020년 기준) 중 9개사(약 20.9%)만 참여⁵⁾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함
- 전체 표준규약 승인 건수(137건)는 2018년(13건) 대비 크게 증가한 2019년 95건에 큰 영향을 받음
 - 다만, 연도별 승인 건수는 2016년 1건에서 2020년 9월 16건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보험회사의 표준규약 승인 건수 대비 실제 복수사용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수의 비중은 은행보다 낮은 수준임⁶⁾(〈표 1〉 참조)

- 생명보험회사의 계약 체결률은 25.9%로서 은행(85.2%)보다 약 5배 낮음
 -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사용자인 기업의 표준형 DC 퇴직연금 도입 수요에 비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공급이 보험회사가 은행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은행보다 높은 편임(〈표 2〉 참조)

- 보험회사와 은행 모두 적립금 규모에 따른 할인 효과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는 감소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준은 은행보다 전반적으로 높음
 - 1년 미만 계약의 적립금 금액 규모별 수수료를 단순평균할 경우, 보험회사가 은행보다 평균적으로 0.06%p 높음⁷⁾

〈표 2〉 표준형 DC 퇴직연금 사업자 유형별 수수료 현황

(단위: %, %p)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 금액 규모별 표준형 수수료				표준형 DC 평균	일반 DC 평균
	5억 원	50억 원	500억 원	5,000억 원		
보험(①)	0.52	0.48	0.43	0.43	0.46	0.54
은행(②)	0.43	0.42	0.38	0.36	0.39	0.55
차이(①-②)	0.09	0.06	0.05	0.07	0.06	-0.01

주: 1)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1년 미만 계약기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합한 수치임.

2) 평균은 적립금 금액 규모별 수수료를 단순평균한 것임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맞춤형 수수료 비교 사이트

○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표준형 DC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식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 수수료 수준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5)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증권회사는 표준형 DC 퇴직연금에 참여하지 않았음

6) 〈표 1〉에서 제시된 현황 수치는 2022년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2020년 9월 당시에 보험과 은행의 계약 미체결률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 이러한 경향은 현재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7) 이는 표준형 DC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DC 퇴직연금에서 보험회사와 은행의 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는 것과 대비됨(〈표 2〉 참조)